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좋은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계약 전	좋은 공인중개사 선택 방법	필수 확인 서류	
		기타 사항	
	좋은 집 찾는 법	전세시세 확인	
		권리관계 확인	
		임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세계약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 시기 및 방법	
	집주인 진위 확인	본인	
		대리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신청방법	
	임대인 명의계좌 송금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 재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F한국주택도시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SGI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6666666666

전세계약 전

至点	テフトメト	かり
66	4 111 1	

공인중개사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중개업 행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자격증을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

() ४१४११ वर्ष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공시가격 확인(https://www.realtyprice.kr)

□ 권리관계 미리학인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으며 갑구/을구만 확인하여 내용 중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이 있으면 주의해야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U 입자 및 건축물대자 확인

불법건축물의 경우 전세보증보험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하고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정부24 https://www.gov.kr)

좋은 공인중개사 선택

전세계약 시,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위해 계약서 작성 전에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좋은 집을 찾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와 조건, 그리고 좋은 집을 찾기 위한 시세 확인법 및 공부(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1 필수확인 서류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 행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중개보조원, 분양대행 등다른 이름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정규 시험을 통과하고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필요합니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식으로 등록되었음을 나타내는 증서입니다. 해당 사무소가 합법적으로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경기부동산포털 등에서 조회하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
-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

③ 부동산 보증설명증명서(공제증서)

부동산 공제증서란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중개업자 대신 피해 금액을 보상해준다는 증명서입니다. 공제증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해당 증서의 공제 기간이 유효한지, 명의 등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증은 합법적으로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사항

① 경력과 평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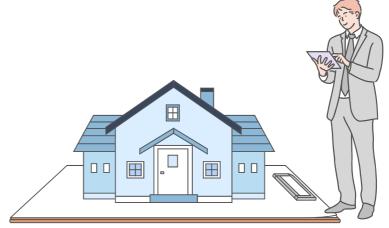
한 지역에서 오래 중개업을 해온 경력 있는 중개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 경험이 풍부한 중개사는 해당 지역 시장에 대한 정보, 관련 법규 지식 등이 풍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② 중개 과정의 투명성

중개사가 계약서 및 거래 과정을 계약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 계약 시 필요 문서 및 계약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에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발품 팔기

좋은 중개사를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역의 여러 중개사를 만나보고 다양한 정보를 쌓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만나보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지인의 추천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무작정 결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 찾기

계약서 작성 전, 좋은 매물을 찾는 것이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위한 선행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시세 확인

① **전세시세 확인법** 네이버부동산·KB부동산 등에서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전세시세 판단법

시세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HUG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을 위한 기준은 공시가격의 126%이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가격 126% = 공시가격 140%(주택가격) × 90%(전세가율)

-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 네이버부동산 https://land.naver.com
 - KB부동산 https://kbland.kr

2 권리관계 확인(등기부등본 확인)

①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 및 하자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측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비교 및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으며 갑구/을구를 확인하여 내용 중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② 신탁등기 주의하기

신탁회사에 신탁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갑구에 적혀 있으면 임대인에게 신탁등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 등기부등본의 발급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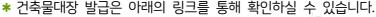
3 임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① 임장

임장이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매물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이나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다른 것이 없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②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

불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다른 것을 말하며, 불법 증·개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정부24 https://www.gov.kr



6666666666

전세계약 시

□ 체납 세금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23.4~)

교 지수인 지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때부 학인

전세보증보험은 입주를 완료한 상태에서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중 이라면 미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선문위 보증공 확인

다가구주택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건물 전체 호수의 보증금들이 우선순위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 서류는 임대차정보제공내역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입니다.

* 선순위 보증금 내역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모든 호수의 보증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하기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했다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격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할 서류, 계약자 진위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등기부상 깨끗한 집을 계약해도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공매로 매각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체납 세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시·군·구청에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미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거나 혹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계약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방법

- 임대인이 발급
 - 부동산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구합니다.
- 임차인이 발급 임차인은 해당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등기부등본 3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가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국세 완납증명서는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열람하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달리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면 전국 세무서(국세)와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열람신청서,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전국 세무서(국세)와 시·군·구청(지방세)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 진위 확인

큰돈이 오고 가는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와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는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 확인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확인 방법

① 전화(ARS)

국번없이 '1382'로 전화 후 안내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합니다. 잠시 후 안내멘트에서 "입력하신 OOO님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는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라고 나오면 위조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입니다.

②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 상단 <서비스> 클릭 → <사실/진위확인> 클릭 → <주민등록증발급상황조회> 클릭 →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교부완료일자가 신분증에 나와 있는 발급일자와 동일하면 위조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위조 확인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면허발급 안내> 클릭 → 맨 아래 <운전면허 정보조회> 클릭 → 빈칸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https://www.gov.kr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대리인 시

가능하면 당사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좋지만 당사자가 외국이나 지방에 나가 있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대리인 계약 시 필요서류

- 위임의 목적이 명기된 위임장 원본(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한 것)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자 인감증명서(위임인이 발급한 것)
- 대리인(계약자) 신분증
- 대리인(계약자) 도장

② 유의사항

위임장에는 위임받은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사유, 관계)이명시되어야 하며 또한 부동산의 표시(위임한 토지, 건물 등)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임사항(위임 내용, 권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합니다.

- *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https://www.gov.kr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 보험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입주를 완료한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IV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거주가구가 여럿인 경우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건물 전체 호수의 보증금들이 우선순위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2가지 서류는 임대차정보제공내역서(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열람내역입니다.

신청방법

- ① 요구서류: 임대차정보제공내역서(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열람내역
- ② 필요서류
 - 임대인 동의서
 - 임대인 인감증명서
 -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자의 신분증
- ③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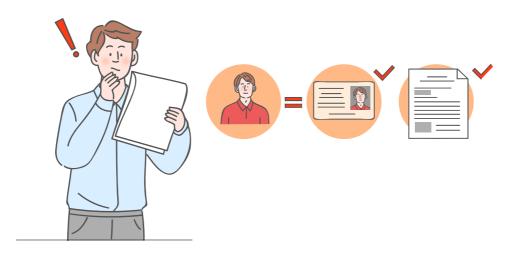
④ 기타 유의사항

- '선순위 총 보증금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지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정보제공내역서의 계약내용에 있는 '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보증금 내역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모든 호수의 보증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V

임대인 명의 계좌 송금

계약은 되도록 임대인 본인과 하는 게 가장 좋으며, 대리인과 진행하게 될 때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잔금은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야 하며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체가 완료되었다면 영수증을 필수로 요구해야 합니다.



6666666666

전세계약 후

등기부등보 재학인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말소등기를 약속한 잔금을 송금하기 전 실제로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 중 특히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 당일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극택입다시나 거래신고

주택임대차 거래신고는 임대인 · 임차인에게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확정일자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의 한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서류 및 보증금액 확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ttps://www.khug.or.kr)

전세계약서 작성 이후에 안전한 임대차 거래 마무리를 위하여 체크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잔금 송금 전 계약 상 문제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기부등본 재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재확인

갑구의 확인사항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가압류 등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을 송금하기 전 직접 재확인 후 계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을구의 확인사항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을 송금하기 전 직접 재확인 후 계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말소등기를 약속한 경우

임차인의 전세대출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말소등기를 약속한 경우에는 잔금을 송금하기 전 실제로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말소등기 접수서류(원본) 확인 및 등기접수증 직접 확인
- * 등기부등본은 세무서, 구청, 주민센터나 해당 관할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에서도 아래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II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에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요건 중하나로 임대차계약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전입신고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신고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전입신고는 잔금일(이사)에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요건입니다.

1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직접 방문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전입신고서류(방문작성)

② 인터넷 접수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신청절차에 따라 입력하면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정부24 https://www.gov.kr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① 직접 방문

② 인터넷 접수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스캔본을 준비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신청서를 절차에 따라 입력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주택임대차 거래신고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 임차인에게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확정일자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의 한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 거래신고방법

① 직접 방문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② 인터넷 접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신청절차에 따라 입력하면 주택임대차 거래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V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신청기한은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가능합니다.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① 직접 방문

주택도시보증공사 본ㆍ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③ 어플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 HUG)
- * 필요서류 및 보증금액 및 요건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

2 HF한국주택도시공사(일반전세지킴보증)

신청방법

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가능합니다.

- 보증이용절차: 보증상담 >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료 수납 및 보증서 발급
- ★ 필요서류 및 보증금액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F한국주택도시공사 https://hf.go.kr

3 SGI서울보증보험(전세금보장신용보험)

신청방법

SGI의 본·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가능합니다.

- * 각 지점별로 상품문의 후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 필요서류 및 보증금액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GI서울보증보험 https://sgic.co.kr



